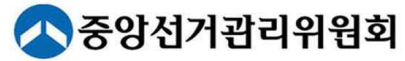


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.

## 재외선거 안내문 《제2호》



제공일자 2011. 2. 9.

☎ 82-2-503-0648  
FAX 82-2-507-4352

# 재외선거제도 도입 배경

☞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,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음.

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었고,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(예정)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.

☞ 2004년 외국 거주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, 2007. 6. 28. 헌법재판소는 “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,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,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” 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.

2009. 2. 12. 「공직선거법」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2012. 4. 11.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2012. 12. 19.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국외 거주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으로, 국내와 같이 재외국민수의 80% 정도를 유권자로 예상하면, 약 230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**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 
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.**

◆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